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16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이정헌・황정아・노종면

박민규 • 최민희 • 김우영

정동영 · 한민수 · 조인철

김 현 • 이후기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 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 려는 것임(안 제46조, 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理事는"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 우 성별(性別)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라 하다)를 두다.

-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②
이사 <u>11人</u> 으로 구성한다.	<u>13명</u>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u>지역성 및 사회</u>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u>다음 각 호에</u>
<u><신 설></u>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
	령이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
<신 설>	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
	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
	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
	천하는 사람 4명(지역방송 관
	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
	함한다). 이 경우 성별(性別)

<신 설>

<u><신</u>설>

④ ~ ⑥ (생 략)

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단서</td>신설>

<신 설>

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 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한다.

<신 설>

⑧・⑨ (생 략)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15.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
- 8. ~ 1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 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

<u>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u> <u>다.</u>

-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
-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